

# 안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·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         |       |
|----------|-------|
| 의안<br>번호 | 9-388 |
|----------|-------|

제출년월일 : 2024. 2.19.  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## 제안이유

- 지역보건법 일부 개정(2023.3.28.)과 관련하여 안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·징수 기준을 개정하여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강화하고자 함

## 주요내용

- 과태료 부과 기준 추가 (안 제2조)

## 개정조례안 : 【붙임 1】

## 신·구조문대비표 : 【붙임 2】

## 관계법령발췌서 : 【붙임 3】

##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사항 없음

## 예산수반사항 : 【붙임 4】

※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## 사전예고(결과) : 의견없음

- 입법예고 : 2024. 12. 04. ~ 2024. 12. 26. (22일간)

## 기타 참고사항

- 현행조례 : 【붙임 5】
- 방침결정문 : 【붙임 6】

**[붙임 1]**

## **안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·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

안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·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「지역보건법」 제34조제2항”을 “「지역보건법」 제34조제1항 및 제2항”으로 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[ 별표 ]

과태료 부과기준 (제2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- 가.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.
- 나.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었던 날 이전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, 이 경우 위반횟수의 산정은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- 다. 위반행위가 4차 이상일 때에는 3차 위반금액을 부과한다.

2. 개별기준

| 위반사항  | 근거법령               | 부과금액(단위 : 만원) |       |       |
|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
|   |                    | 1차위반          | 2차위반  | 3차위반  |
| 1. 「지역보건법」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과기하지 아니한 자         | 「지역보건법」 제34조제1항    | 1,000         | 2,000 | 3,000 |
| 2. 「지역보건법」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 | 「지역보건법」 제34조제2항제1호 | 100           | 200   | 300   |
| 3. 「지역보건법」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                   | 「지역보건법」 제34조제2항제2호 | 100           | 200   | 300   |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| 소관 실·과      |                | 보건정책과    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입<br>안<br>자 | 실·과장<br>직위·성명  | 보건정책과장<br>이영옥    |
|             | 담당·팀장<br>직위·성명 | 보건행정팀장<br>최선주    |
|             | 담당자<br>성명·전화   | 김지혜<br>(행정 5911) |

**[붙임 2]**

**신 · 구조문대비표**

| 현행   |                    | 개정안  |       |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|
|--|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|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제2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<br>「지역보건법」 제34조제2항에<br>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<br>별표와 같다. |                    | 제2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<br>「지역보건법」 제34조제1항 및<br>제2항-----. |       |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|
| [별표]<br>2. 개별기준  |                    | [별표]<br>2. 개별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|
| 위반사항   | 근거법령               | 부과금액(단위 : 만원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| 근거법령  | 부과금액(단위 : 만원)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|
|  |                    | 1차 위반  | 2차 위반 | 3차 위반 |   | 1차 위반              | 2차 위반 | 3차 위반 |       |
| 1. 「지역보건법」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          | 「지역보건법」 제34조제1항제1호 | 100  | 200   | 300   | 1. 「지역보건법」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        | 「지역보건법」 제34조제1항    | 1,000 | 2,000 | 3,000 |
| 2. 「지역보건법」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「지역보건법」 제34조제1항제2호 | 100  | 200   | 300   | 2. 「지역보건법」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 | 「지역보건법」 제34조제2항제1호 | 100   | 200   | 300   |
|  |                    |  |       |       | 3. 「지역보건법」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                   | 「지역보건법」 제34조제2항제2호 | 100   | 200   | 300   |